

의안번호	제 396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31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제 396 호
----------	---------

제출연월일 : 2016년 5월31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북연구원 인근 청주시 도시계획도로(대성로) 확장으로 현 부지 및 청사건물 일부가 편입되어 2018년 철거됨에 따라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신 청사 건립이 필요하고
-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옥전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과 산림경영에 적합한 제천시유림과 교환하려는 것이며
- 영동군에서 공용주차장 조성등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키 위해 구)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매입 요청하여 처분하려는 것이며
- 지역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취득한 임대용지를 선정된 기업이 최단기간 매입을 희망함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며
- 보은군 및 단양군 입주기업의 희망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충북연구원 청사 신축》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현, 청사 및 (구)적십자 주차장)
- 사업기간 : 2016. 7. ~ 2018. 2.
- 신축규모 : 연면적 4,000㎡(지하 1층, 지상 4층)
- 사 업 비 : 128억원(충북연구원 기금 80억원, 도 출연금 48억원)

《제천시유림 교환 취득》

- 위 치 : 제천시 백운면 덕동리 산52
- 취득시기 : 2016. 7. ~ 2016. 11.
- 취득규모 : 임야 1필지 177,719㎡
- 재산가액 : 115백만원
- 취득사유 : 보존용재산인 보존림과 산림경영용으로 활용

□ **재산의 처분**

《**도유림 교환 처분**》

- 위 치 :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산89번지 등 2필지
- 처분시기 : 2016. 7. ~ 2016. 11.
- 처분규모 : 임야 2필지 140,231m²
- 재산가액 : 97백만원
- 처분사유 : 도유재산인 도유림과 제천시유재산인 사유림과 교환

《**구)영동소방서 부지 및 건물 매각**》

- 위 치 :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2번지 등 2필지
- 처분시기 : 2016. 6. ~ 2016. 10.
- 처분규모 : 부지 1,079.00m², 건물 1,454.97m²
- 재산가액 : 1,042백만원
- 처분사유 : 공용주차장 조성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

《**진천 신척산업단지 임대용지 매각**》

- 위 치 :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988번지
- 처분시기 : 2016.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의결 후 즉시
- 처분규모 : 부지 10,882.1m²(3,297평)
- 재산가액 : 1,430백만원
- 처분사유 : 지역경제활성화, 투자유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취득한 임대용지를 선정된 기업이 최단기간 매입희망

□ **재산의 변경**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토지 매입 변경**》

<보은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4. 3 ~2016. 12	좌동	
위 치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보은산업단지 내(33-2블록)	보은군 삼승면 우진리 보은산업단지 내(10블록)	변경 (가지번 213)
매입규모	15,070m ²	좌동	
사 업 비	1,500,000,000원	좌동	추정

<단양군>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기간	2014. 3 ~2016. 12	좌동	
위 치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79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983	변경
매입규모	16,920m ²	좌동	
사 업 비	1,505,203,200원	좌동	추정

- 변경사유 : 보은군 및 단양군 입주기업의 희망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

3.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2016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건물	1건	4,000.00	12,876,275				
	기타							
1	토지							
	건물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9	4,000.00	12,876,275	2016. 7~ 2018. 2	충북연구원 신축		
	기타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14-3)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수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2건	11,961.10	2,243,631				
	건물	1건	1,454.97	228,831				
	기타							
1	토지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번지 등2필지	1,079.00	813,190	2016.6~ 2016.10	공용주차장조성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	영동군	
	건물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57번지 등2필지	1,454.97	228,831	2016.6~ 2016.10	공용주차장조성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	영동군	
	기타							
2	토지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988번지	10,882.10	1,430,441	2016. 6	임대용지 선정된 기업이 매입 희망	(주)내츨스푸드(입주기업)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계법령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림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